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1. 예정]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당사 홈페이지[[www.dlcon-apt.co.kr](http://www.dlcon-apt.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블럭
- 공급규모 :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2층~지상 25층 4개동, 총 431세대
- 주택형 : 84㎡A, 84㎡B, 84㎡C
- 입주예정 : 2024년 8월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총 64세대(기관별 배정 세대수 아래표 참고)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구분	주택형(㎡)		84㎡A	84㎡B	84㎡C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당첨예정자	1	1	1
			예비대상자	3	3	3
	지자체 철거민		당첨예정자	1	-	-
			예비대상자	3	-	-
	장애인	경기	당첨예정자	4	2	2
			예비대상자	12	6	6
		서울	당첨예정자	2	2	2
			예비대상자	6	6	6
		인천	당첨예정자	2	-	-
			예비대상자	6	-	-
	북한이탈주민		당첨예정자	2	1	1
			예비대상자	6	3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당첨예정자	1	1	-
			예비대상자	3	3	-
	장기복무 제대군인		당첨예정자	1	-	1
			예비대상자	3	-	3
	중소기업 근로자		당첨예정자	3	1	1
			예비대상자	9	3	3
	우수기능인		당첨예정자	1	-	-
			예비대상자	3	-	-
우수선수		당첨예정자	1	-	-	
		예비대상자	3	-	-	
의사상자		당첨예정자	1	1	-	
		예비대상자	3	3	-	
납북 피해자		당첨예정자	1	-	1	
		예비대상자	3	-	3	

다문화 가족	당첨예정자	1	1	-
	예비대상자	3	3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당첨예정자	1	-	1
	예비대상자	3	-	3
국가유공자 등	당첨예정자	11	5	5
	예비대상자	33	15	15

##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예정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4월 21일(목)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당사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
주택전시관 개관	2022년 4월 22일(금) 예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
기관추천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년 5월 2일(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인터넷 접수
당첨자발표	2022년 5월 12일(목)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인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10:00~14:00)가능합니다.

##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예치금)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인 경우</li> <li>■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하거나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li> <li>■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li> <li>■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 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 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li> <li>-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li> <li>-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경우</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li> <li>■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li> </ul>

## 4. 유의사항

-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입별 평면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이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https://www.dlcon-apt.co.kr>)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5. 문의사항

대표번호	031-311-0431
홈페이지	<a href="http://www.dlcon-apt.co.kr">www.dlcon-apt.co.kr</a>

## 6. 위치도

■ 현장 :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블록 / 주택전시관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번지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안산선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을 참조한 것입니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2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공구) 실시계획 승인을 참조한 것입니다. ※ 사업지 인근 토지이용계획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21-1462호)을 참조하였습니다.